

Muan Web Contents

2022년 05월 18일 22시 54분



목차

목차	2
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	3
사용신고 안내	3
신고대상 자동차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신고서류(공통서류 + 주차장서류 준비)	3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	3
과태료	4

신규등록	이전등록	변경등록	말소등록
저당권설정/말소등록	임시운행허가	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	등록증/번호판/봉인재교부
등록원부발급			

사용신고 안내

신고대상 자동차

최대적재량 2.5톤이상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(사용본거지가 무안군 외 지역은 등록불가)

수수료

3,000원

관련법규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

신고서류(공통서류 + 주차장서류 준비)

구분		구비서류
공통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(신규·변경·폐지)신고서 신분증 (위임시 : 위임장, 위임받는자 신분증)
추가 서류	본인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대장등본1부(대지, 공장용지, 잡종지) 지적도
	임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대장등본1부(대지, 공장용지, 잡종지) 지적도 임대차계약서(차고지 사용승낙용)
	아파트 또는 공동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파트 :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(2.5톤만 해당됨) 공동주택 : 거주자 승낙서(전체 입주가구)
	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임대(주차)예약서(임대시 제출)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

- 위반내용 : 유상(有償)운송 또는 임대
- 금액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과태료

구분	기간	금액	관련법
말소등록	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	5만원	자동차관리법
차고지변경	10일초과후 매1일 초과시 마다	1만원 가산(최고 50만원)	
	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	50만원	화물운수사업법

COPYRIGHT © MUAN-GUN. ALL RIGHTS RESERVED.

MUAN

Web Contents

 무안군